

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-51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「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산업통상부장관

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, 이하 “기본고시”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석유비축의무량조정)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

1. 석유정제업자: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0일분
2.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: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

제4조(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)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[별표]와 같이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을 산정한다.
2.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“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” 산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)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의 이행여부는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.

1. 석유비축의무자는 당해 월의 일평균재고량이 제3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.
2.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“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”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례) 제4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기준 및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에 관한 산정과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

(제4조제1호 관련)

1.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 :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
(예 : '26. 5월의 경우, '25. 4 ~ '26. 3까지)
2. 연간내수판매량의 산정방법 : 기본고시에 따라 산정된 월내수판매량의 합
3.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

구 분	석유비축의무량	운영재고량	부과금면제비축량
석유정제업자	연간내수판매량 × 20일/365일	연간내수판매량 × 20일/365일	연간내수판매량 × 0일/365일
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	연간내수판매량 × 15일/365일	연간내수판매량 × 15일/365일	-